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 7. 19 선고 2016가합270 판결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등기이행청구]

전 문

원 고 A종중(소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선종

피 고 B종중(대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해송

담당변호사 남궁율

변 론 종 결 2017. 7. 5.

판 결 선 고 2017. 7. 19.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C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양평등기소 2008. 2. 18. 접수 제6124호로 마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각

말소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D씨 61세손 E'를 중시조로 하는 소중중으로서 피고와 명칭만 동일할 뿐 실체가 전혀 다른 별개의 종중이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명칭이 동일하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피고의 종전 대표자 주소지로 변경하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소유자인 원고의 의사에 의하지 않은 원인무효인 등기로써 말소되어야 한다.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고유의 의미의 종중이란 공동선조의 후손들에 의하여 그 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후손 상호간의 친목을 목적으로 형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단체로서 특별한 조직행위가 없더라도 그 선조의 사망과 동시에 그 후손에 의하여 성립한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려면 일정한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성이 있어야 하고 또한 그 대표자가 있어야 하므로(민사소송법 제52조),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하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도 그와 같은 비법인사단의 요건을 갖추어야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실심의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1다64607 판결 참조).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하는지는 종중의 목적, 그 성립과 조직의 경위, 구성원의 범위와 자격 기준, 종중 규약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다61349 판결 참조).

나. 살피건대, 위 법리에 기초하여 갑 제3호증의 2, 3, 갑 제5호증의 1, 갑 제6~8, 10,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F의 일부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및 그로부터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특정한 공동선조의 후손들로 구성되어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종족집단체로서 고유한 의미의 종중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원고의 1993년도 규약은 “종친회(G파 중 H파 제26대) 규약”이라는 표제 하에 제1조(명칭)에서 “본회는 종친회라 칭한다.”고, 제2조(목적)에서 “본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부상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만 각 규정하고 있을 뿐, 공동선조의 분묘수호 및 봉제사와 같은 종중 고유의 목적은 물론이거니와 공동선조가 누구인지, 회원의 자격은 어떠한지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제2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의 공동선조는 ‘D씨 51세손 I’라고 주장하였다가 이후에는 ‘D씨 61세손 E’라고 위 주장을 반복하였는데, 이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종중 특정의 가장 중요한 기준인 공동선조가 누구인지에서부터 그 일관성이 없다.

2) 원고는 피고와 명칭만 동일한 뿐 ‘E’를 중시조로 하여 경기 양평군 J리 일대에 세거를 한 소종중이라고 주장하면서 ‘K소종중’이라는 명칭이 기재된 2014년~2016년 정기총회 회의록 및 2017. 6. 3.자 임시총회 회의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① 2014년~2016년 회의록에 참석자 명부가 첨부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이 사건 소 제기 직전에 개최된 원고의 2016. 2. 20.자 총회의 회의록에는 총 종중원으로 불과 30명이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7. 6. 3.자 임시총회 회의록에는 총 182명의 종중원 명단이 첨부되어 있고 위 회의록은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 비로소 작성된 점, ③ 2016. 2. 20.자 총회 회의록 및 1993년도 규약에는 원고의 명칭이 여전히 ‘A종중’이라고만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2014년~2016년 정기총회 회의록 및 2017. 6. 3.자 임시총회회의록은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는 고유한 의미의 종중이라기보다 종친회의 형태로 운영되어 오다가 어느 시기부터 종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게 된 친목단체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3) 또한 원고는 1972년~2005년, 2012년 및 2013년도 회의록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회비 징수, 금전 지출현황 등을 기재한 금전출납장부로 보일 뿐 원고의 종중으로서 활동 내역이 기재된

회의록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원고가 'E'를 비롯한 공동선조들의 분묘수호, 봉제사,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활동 등 고유한 의미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할 만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왔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4) 한편 원고가 'A종중'이라는 명칭으로 1989. 5. 17. 양평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그와 같은 등록번호가 부여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거나 종중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곧바로 추인할 수도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승곤, 판사 박하영, 판사 공우진

별지

목 록

1. 경기 양평군 L 답 251㎡
2. 경기 양평군 M 전 592㎡
3. 경기 양평군 N 전 321㎡
4. 경기 양평군 O 임야 129㎡
5. 경기 양평군 P 전 757㎡
6. 경기 양평군 Q 답 265㎡
7. 경기 양평군 R 대 542㎡
8. 경기 양평군 S 전 321㎡
9. 경기 양평군 T 전 992㎡
10. 경기 양평군 U 답 1,838㎡
11. 경기 양평군 V 전 2,688㎡ 끝.